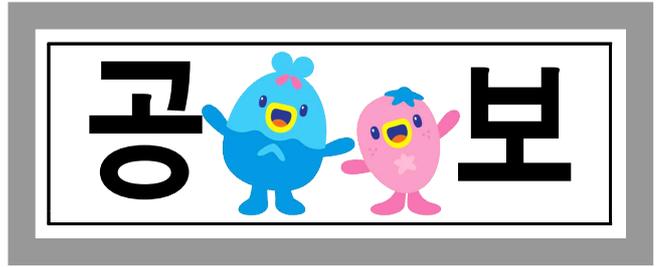
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516호 2024년 2월 13일(화)

## 입법예고

-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2

발행 : 시 민 소 통 담 당 관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##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2월 13일

## 속 초 시 장

### 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개정이유

불필요한 위원회 중복 구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.(안 제5조)

나.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속초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)

다.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 삭제(안 제11조)

### 4. 자치법규안 : 붙임

## 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나. 의견제출 및 문의처

- 1) 주 소 : 우)248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청 건설과 (도로관리팀)
- 2) 연락처 : 전화 033-639-2487 / FAX 033-639-2485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## 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과 도로관리팀(033-639-248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법 제7조제2항”을 “법 제7조의2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법 제7조제7항”을 “법 제7조의2제7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② 속초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「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의 수립절차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<u>법 제7조제2항</u>에 따른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<u>법 제7조제7항</u>에 따라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기본계획을 확정·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⑤·⑥ (생략)</p> <p>제10조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</p>	<p>제5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의 수립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법 제7조의2제2항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법 제7조의2제7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속초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「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.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중 4명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속초시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속초시 관계 공무원
2. 관할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
3. 그 밖에 보행, 교통, 도시 계획 및 환경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

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며, 간사는 해당부서 업무팀장이 된다.

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11조(수당 등) <삭 제>